

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 
21-46-4  
(의결, 공개)

---

[제3기 인구정책TF]

#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

---

2021. 9. 30

관계부처합동

# 순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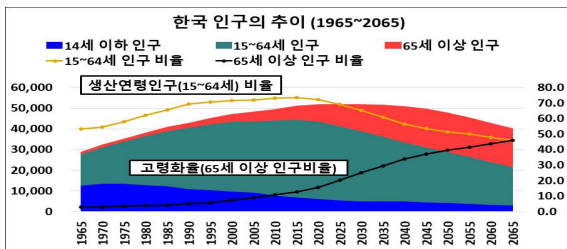
I. 추진배경 .....	1
II. 현황 및 문제점 .....	2
[참고] 주요외국의 사례 .....	4
III. 비전 및 추진전략 .....	5
IV. 추진과제 .....	6
1.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확대 .....	6
2. 노동이동 촉진 등 재취업지원 활성화 .....	7
3. 기술창업 지원 확대 .....	10
4. 직무역량 및 고용안전망 강화 .....	12
5. 고령자 고용인프라 확충 .....	14
붙임. 추진계획 .....	17

# I. 추진배경

## □ [인구구조 변화]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퇴직 현실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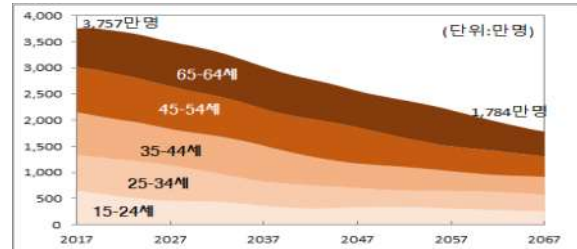
- **(인구구조 변화)** '00년 고령화사회 진입 이후 및 '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(20.3%) 전망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진행중
  - \* 고령화→초고령사회 도달년수: (佛) 143년 (美) 88년 (伊) 81년 (獨) 77년 (日) 35년 (韓) 25년
- 생산가능인구(15~64세)는 '18년 정점 이후 지속 감소하고 속도도 가속화
  - \* 생산가능인구(만명): ('20) 3,736 → ('50) 2,449 → ('67) 1,784 ('20 대비 △1,952)
- **(베이비부머 퇴직)** 베이비부머(55~63년생, 724만명)가 '16년부터 정년연령을 넘기 시작, '24년에는 모두 정년연령을 초과하여 대량 은퇴 현실화

< 인구구조 변화 >



\* 자료: 통계청 장래인구추계

<생산가능인구 변화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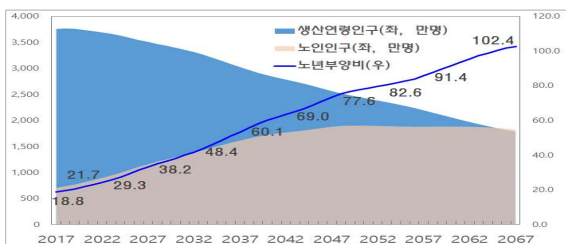


\* 자료: 통계청 장래인구추계

## □ [성장잠재력 저하] 고령화로 성장기반 약화, 부양부담 증가 초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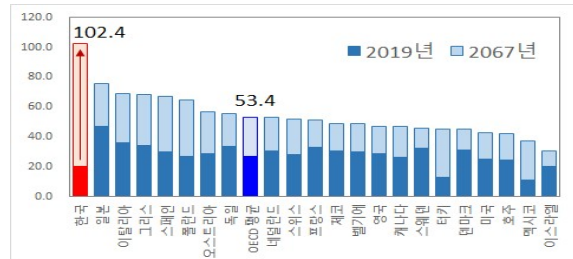
- **(성장잠재력 저하)** 고령화는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노인부양부담\*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여 경제성장 및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
  - \* (65세/15~64세) '80년 10%미만이었으나 최근 20%로 상승 '50년 70% 초과 전망

< 노인부양비 증가 >



\* 자료: 통계청 장래인구추계

< 주요국 노인부양비 비교 >



\* 자료: 통계청

## II. 현황 및 문제점

### □ [고령자 노동시장] 고령자 고용률은 높으나 고용의 질은 낮음

○ **(높은 고용률)** '20년 신중년(50~69세) 고용률은 66.2%로 전체 고용률('20년 60.1%)을 상회하며 '09년 이후 대체로 증가('16년, '18년, 20년 감소)

○ **(고용의 질)** 상용직 비중이 낮고, 일용직 및 자영업자 비중이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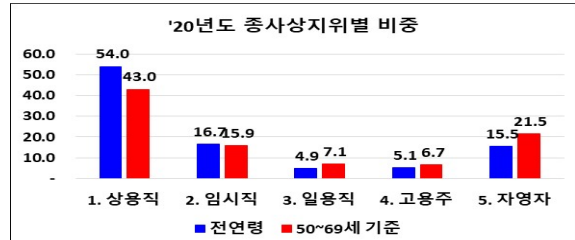
\* (전연령) ▲상용 54.0% ▲임시 16.7% ▲일용 4.9% ▲고용주 5.1% ▲자영업자 15.5%  
 (신중년) ▲상용 43.0% ▲임시 15.9% ▲일용 7.1% ▲고용주 6.7% ▲자영업자 21.5%

< 신중년 고용률 및 증감(% , %p) >



\* 자료 :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

< 상용·일용직 및 자영업자 비중 비교 >



\* 자료 :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

○ **(업·직종)** 또한, 제조(14.8%)·도소매(11.8%) 업종, 단순노무(18.6%)·장치기계(13.6%)·서비스직(13.3%) 직종 등 자동화 취약 업·직종에 다수 종사

### □ [근로희망 증가] 퇴직 이후 재취업 등 노동시장 잔류희망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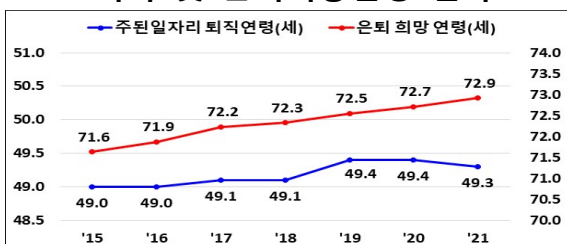
○ **(장래근로 희망)**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('21년 49.3세)이 정년 연령에 비해 낮으며, 장래근로희망 연령('15년 71.6세 → '21년 73세)도 빠르게 증가

\* 재취업 희망사유(55~79세) : 생활비보탬(58.7%), 일하는 즐거움(33.2%) 등

○ **(퇴직전문인력 증가)** 고학력·전문직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으며, 퇴직 이후에도 생계유지 외에 사회적 공헌 등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 존재

\* '50~69세의 5명중 1명이 대졸 이상 고학력자(21.7%)

< 퇴직 및 은퇴희망연령 변화 >



\* 자료 : 통계청 경찰 고령층 부가조사

< 연령대별 학력 분포 >



\* 자료 :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('20)

□ **[퇴직 이후 어려움] 퇴직 이후 재취업 · 창업에서 어려움 존재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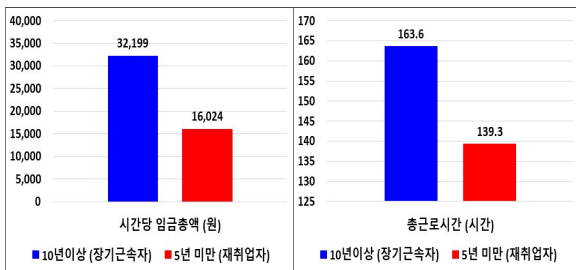
○ **(재취업 어려움)** 중·고령자 생애 일자리 퇴직 후 재취업 시 숙련·근로 조건 등에서 **하향 이동**하는 경향

- \* 재취업자 훈련 참여율 24.0%, 생애 일자리 지속자 훈련 참여율 31.4%
- \* 중·고령 재취업자(근속기간 5년 미만)의 임금수준은 장기근속자의 49.8%

○ **(생계형·과밀업종 창업)** 퇴직후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으나, 기술·경험 활용이 어려운 숙박·음식점업 등 생계형 창업 위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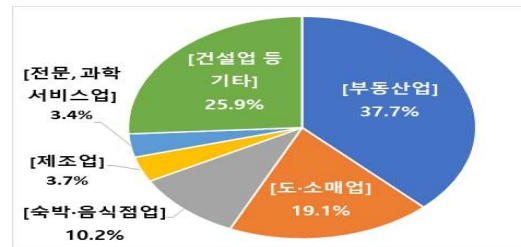
- \* 도·소매업, 숙박·음식점업, 부동산업의 창업비중 67.0%('20 창업기업동향)

< 재취업자 임금 및 근로시간 비교 >



\* 자료 :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('19)

< 중장년 신생창업 현황 >



\* 자료 : 창업기업동향('20)

□ **[정부지원 미흡] 고령자 고용서비스 · 훈련 및 창업 지원 부족**

○ **(직접일자리 위주 지원)** 고령층은 직접일자리 위주로 지원, 노인일자리 사업은 '15년 33.7만명에서 '20년 74만명으로 증가하였으나 내실화 필요

○ **(적극적 고용지원 서비스 부족)** 직업훈련·고용서비스·장려금·창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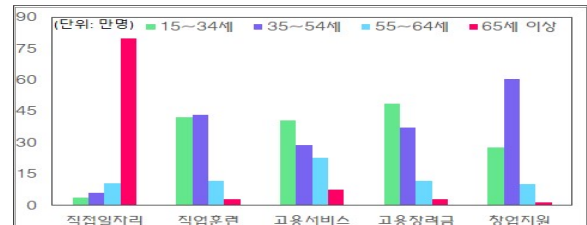
- \* 고령층 중 지난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 비율은 12.8%('21.경할 부가조사)

<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 및 예산 >



\* 자료 : 복지부

< 연령대별 일자리사업 지원 현황 >



\* 자료 : 고용노동부('20년 일자리사업평가)

◇ 「인구TF 고령자 고용반\*('21.3.~)」 논의를 거쳐 베이비부머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 마련

- \* 구성: 고용부 주관, 기재부·복지부·중기부·과기정통부 등 참여

**[외국]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사회·경제적 문제로 대두 → 고령자 고용기회 확대하고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中**

**1] 일본(고령자고용안정법)**

- (단계적 고용연장) 법적 정년은 60세('98~) → 단계적으로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 의무('06~) → 70세까지 취업확보조치 노력\*(21.4월~)\*
  - \* 기존 고용확보조치(정년연장·폐지, 재고용) 외에 '직접(특수관계사 포함) 고용의무 아닌 타 사업장으로 재취업, 사회공헌 등까지 범위 확대
- 고령자 고용·고용유지에 대한 지원금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
  - (사업주) 고령자 신규고용 조성금\*, 65세이상 고용촉진 조성금(계속고용촉진, 고용관리개선, 무기고용전환 등 3가지)
    - \*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(60~65세)나 65세이상 이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
  - (근로자) 고연령계속고용급부금(60세이후 임금 25%이상 감소시 15% 지원)
- '업종별 고령자 고용촉진 가이드라인' 개발·보급('98~18년 82개 업종), 작업시설 개선 지원, 고용환경 개선 컨설팅 등(JEED)

**2] 독일**

- 근로시간 유연화(근로시간계좌제 및 임금보전),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, 고령자 고용지속장려금\* 등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촉진
  - \* 장기실업, 직업훈련 수료 고령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
- 재취업시 임금보전제도\*(Initiative 50plus), 창업지원제도\*(Grunder 50plus), 시니어전문가 파견서비스(SES) 등을 통해 재취업지원
  - \* 55세 이상 근로자 조기퇴직 감소 위해 재취업후 1년간 임금차액 50%, 2년차는 30% 지원
  - \*\* 50세 이상 고령실업자의 창업·창업환경개선 등 비용지원(수강비용의 70~80% 지원)

**3] 영국**

- (Fuller Working Lives) 고령실업자에 대한 포괄적 취업지원(Business Champion for Older Workers)\*, 재훈련, job-center 확대 등
  - \* 직장복귀지원·능력개발, 진로서비스(이력서·면접기술 등), 건강관리 등
- 사용자용 가이드스(고령자 관리자를 위한 지침), 견습제도, 유연근무와 정년선택, 조부모플러스(grandparents plus)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

### Ⅲ. 비전 및 전략

- ◇ 일할 의지·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희망은퇴연령까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→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 완화



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지원	주된 일터 계속고용 확대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사회적 논의 준비</li> <li>②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 확대</li> <li>③ 직무중심 임금체계 확산 지원</li> </ol>
	재취업 지원 활성화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고령자 고용장려금·노동전환지원금 신설</li> <li>②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</li> <li>③ 신중년 적합직무 및 경력형 일자리 내실화</li> <li>④ 퇴직전문인력 활용 숙련전수</li> <li>⑤ 노인일자리 내실화</li> </ol>
	기술 창업지원 확대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기술창업 사전 준비 지원</li> <li>② 실전 기술창업 사업화 지원</li> <li>③ 기술창업 접근성 제고</li> </ol>
직무역량 및 고용안전망 강화	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고령자 특화 직업훈련 확대</li> <li>② 고령자 디지털 전환 지원</li> <li>③ 고령자 고용 안전망 구축</li> </ol>
고령자 고용인프라 확충	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고령자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</li> <li>② 고령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</li> <li>③ 고령자 고용 정보제공 강화</li> <li>④ 고령자 고용서비스 종사인력 역량 강화</li> </ol>

## IV. 추진과제

### 1.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확대

- ❖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등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,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 확대를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

#### ①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 논의

- ① (경사노위 연구회) '21.下 경사노위 연구회(고령사회대응연구회, '21.9~'22.2)를 통해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방안에 대한 논의 추진
  - 해외사례 조사, 60세 정년 의무화 효과 분석 등을 토대로 고용연장 관련 쟁점 도출하고,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실시
- ② (사회적 논의 준비)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사회적 논의 추진
  - 추진시기·방법 등은 경사노위 연구회 종료 후 별도 노사협의 거쳐 추진

#### ②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 확대

- ① (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) 기업의 자발적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을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개선\* 및 지원규모 확대\*\*
  - \* 지원대상 근로자 및 기업별 지원한도 확대 등('21.8월~)
  - \*\* 지원규모 확대('21년 2,274명 → '22년, 3,000명)
- ② (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지원)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시설·설비, 근로환경 등을 개선하고 고령자 고용이 증가한 경우 지원방안 검토
  - \* 고용환경개선 시설·설비 지원금, 고용환경 개선 이후 고령자고용 증가 시 지원 등

#### ③ 직무중심 임금체계 확산 지원

- ① (우수사례 확산) 전문가·기업관계자 등과 「임금·직무 포럼」 운영 등을 통해 직무중심 임금체계 사례 확산 추진
- ② (임금정보 제공) 임금직무 정보시스템([www.wage.go.kr](http://www.wage.go.kr)) 통해 다양한 임금정보 제공
  - \* 기업특성, 직무특성 및 인적속성 등에 따른 임금수준 분포 및 임금현황 등 공개



## 2. 노동이동 촉진 등 재취업지원 활성화

- ❖ 중소기업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, 재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, 신중년 일자리 확대 등 퇴직 이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재취업 지원 촉진
- ❖ 베이비부머 등 다양한 욕구·경험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전문인력 활용 및 노인일자리 내실화

### ① 노동이동 촉진을 위한 지원금 신설

- ① **(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)** 고령자의 노동이동 지원을 위해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추가채용 인건비의 일부 지원\*(22년 54억, 6000명)

\* 고령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(1인당 분기 30만원)

- ② **(노동전환 지원금 신설)** 저탄소·디지털전환 등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위기산업 종사 재직자 대상으로 직무전환·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노동전환 지원금 신설('22)

\*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(51억원, 2,300명)

### ②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

- ① **(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정착 지원)**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 의무화('20.5월~, 1,000인이상) 실태조사('21) → 운영기준 상향 등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('22)

\* 서비스 기준(16시간 이상) 상향, 이행력 제고방안 등 개선방안 검토

- 의무화 이행지원을 위해 기업 컨설팅 및 프로그램 개발('21.下)

\* 기업 컨설팅(450개소), 인사담당자 교육(900명), 운영모델 개발·보급 등('21년, 49억원)

- ② **(재취업지원서비스 모델 발굴·확산)** 재취업지원서비스 이행 우수사례 (대상자별, 업종별 등) 발굴, 사례집 배포 및 포상 등 실시
- ③ **(중소기업의 재취업지원)**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위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취·창업 기능 강화('21년 4만명)
- ④ **(맞춤형 재취업지원프로그램)** 경기변동,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노동이동 지원 강화를 위해 업종별·직무 특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 확충
  - \* 중장년일자리센터(8개소)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는 업종특화 프로그램(금융업 등 7개업종\*), 직무특화프로그램(14개), 자영업자 전직지원프로그램 등 확대
    - ↳ 금융업(15), 조선업(16), 건설업(18), 자동차(19), 관광업(20), 항공업/해운항만업(21)

### ③ 신중년 적합직무 및 경력형 일자리 내실화

- ① **(신중년 적합직무 확대)** 산업구조 변화 등과 관련하여 고령자 구인 수요 증가하는 직무들을 발굴하여 신중년 구직자들의 재취업 지원
  - 협회·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통해 신규직무를 발굴·지원
    - \* 추가직무 발굴 의견수렴(9~10월) → 선정 전문위원회(11월) → 고시개정(12월)
- ② **(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내실화)** 경력·전문성 보유한 퇴직인력의 숙련유지 및 재취업 지원 위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내실화
  - 퇴직전문인력의 활동분야 확대를 위해 민간기관도 참여 허용
    - \* 지자체·사회적기업·비영리법인 이외에 '사회공헌 부서있는 민간기업'도 참여 확대('21.7월)
  - 참여 종료 후 재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서비스기관 등과 연계를 강화하고, 참여기관의 평가기준에 재취업을 포함 추진
    - \* 참여 종료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참여자들을 인근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에 연계('21.下~)

#### 4 퇴직전문인력을 활용한 숙련전수

① **(고경력 과학기술인)**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청소년의 과학교육 지원

-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체계적인 관리·지원을 위한 인력DB 확대\*

\* (기존) 퇴직한 만50세 이상 과학기술인 → (확대) 퇴직 예정자(3년) 및 퇴직 후 계약직 연구원(21년)

② **(뿌리산업 기술 노하우 전수)**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민간의 기술 전문가\*를 활용하여 1:1 현장코칭\*\* 등을 통한 숙련기술 전수

\* DB현황(432명): 산업현장교수(226), 기능한국인(160), 명장·우수숙련기술인 등(46)

\*\* 기술 노하우(직무교육, 명장 노하우 등) 및 환경안전 등 맞춤형 교육(뿌리산업 등 연간 300명)

#### 5 노인일자리 내실화

① **(노인일자리 모델 다변화)**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발굴사업 시범운영('22년)을 통해 기존 사업 틀에서 벗어난 신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모델 발굴 (활동시간, 사업 기간 등 자율)

\* (기존) 인건비 위주 지원 → (개선)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등 외부자원을 연계하여 인건비를 지원받고 국비를 통한 수행기관 인프라 지원 확대

② **(인프라 내실화)**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직접 설치·운영하는 지자체의 관리 책임성 확보,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배치기준 현실화

\* 사회서비스형 전담인력 배치기준 120명당 1명('21년) → 112명당 1명('22년)

③ **(맞춤형 노인지원팀 확대)** 욕구별 교육 및 일자리 연계를 위한 한국 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('21년 10개소) 내 맞춤형 노인지원팀 확대 ('21년 3개소 → '22년 5개소)

- 상담을 통해 고용부 워크넷,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등을 활용한 적합한 공공·민간일 자리를 매칭하거나 필요한 취업교육 및 복지서비스 연계

-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특성에 따른 직무교육을 위한 강사 및 교육장 지원

### 3. 기술창업 지원 확대

❖ 풍부한 경험·기술과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퇴직 인력이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교육 및 사업화 지원

#### ① 기술창업 사전준비 지원

① (대기업 등 퇴직지원 프로그램 연계) 대기업·공공기관의 자체 퇴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퇴직 예정자에게 기술창업 심화교육 및 멘토링 연계

- 퇴직 예정자가 재직중인 기업을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직접 방문 하여 교육하는 “찾아가는 창업 교육·멘토링” 프로그램 제공

\* (기업) 「고령자고용법」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'21년부터 고용 1,000명 이상 기업 ('18년 945개)은 재취업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

\*\* (공공기관)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의 퇴직군인 기초 창업교육,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인력 개발원의 출연연 예비창업자 교육 등 연간 250여명 규모

② (사내벤처·분사창업 지원) 퇴직 (예정) 우수인력의 역량과 경험이 사장 되지 않고 산업현장으로 선순환되도록 사내벤처·분사창업 지원

- 대기업 등 장기 재직자 (10년 이상)가 사내벤처 민관협력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 (가점 부여)

\* 스핀오프 창업의 실태와 발전과제 ('21.7, 산업연구원)

: 분사창업자 창업당시 평균 연령 43.4세, 석·박사 학위 소지자 41.6%, 기술·연구부서 출신 58.4%로 중년·기술·지식에 기반한 창업으로 일반창업 대비 매출성장률이 2배 이상

#### ② 실전 기술창업 사업화 지원

① (특허기술기반 창업사업화) 유망 특허를 보유한 고기술 중장년을 발굴 하여, 제품화 및 추가권리확보 등을 위한 특허사업화패키지\* 지원 (특허청)

\* 중장년 유망 창업자 선발 및 특허사업화패키지 지원(특허청, 최대 4천만원) → 창업 교육 및 공간제공, 시제품 제작 등 지원(중기부, 중장년 기술창업센터)

**② (자금 공급확대) 유망 중장년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엔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,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 지원**

- 중장년기술창업센터가 추천한 지역의 유망 기술창업기업에 대해 지역엔젤투자허브가 조성한 지역엔젤펀드에서 투자 검토(지역펀드 활용)

\* 지역엔젤투자허브 : '21년 호남권, 충청권 시범 조성

\*\* 창조경제혁신센터, 엔젤투자협회, 액셀러레이터 등이 지역펀드 공동GP로 참여하며, '21년까지 총 100억원 규모 지역펀드 결성 예정 (모태펀드 60억원 출자)

- 중장년 기술경력자의 혁신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'중장년 기술 경력자 창업보증\*'을 연간 2,000억원 규모 지원 (기보)

\* 지원 대상 : 숙련형 (만 40세 이상 고급기술자), 세대융합형 (중장년+청년 공동창업)

\*\* 우대내용 : 보증비율 최대 100%, 보증료 최대 0.7%p 감면, 보증한도 최대 15억원

### ③ 기술창업 접근성 제고

**① (청년↔중장년 네트워킹) 중장년이 보유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과의 네트워킹 지원**

-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청년 스타트업과 중장년 예비창업자가 네트워킹하며 교류할 수 있는 장 마련

\* 중장년은 청년의 창업경험 공유, 청년은 중장년의 전문지식기술을 전수받아 사업 리스크 경감

**② (중장년 창업센터 기능 강화)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 창업자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및 인프라 활용도 제고**

- 중장년이 급변하는 최신 산업 트렌드의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, 관련분야 전문가(대학·연구원)와의 교육·멘토링 기회 마련

\* 중장년은 신기술이나 트렌드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경향을 보임('21, 중소벤처기업연구원)

-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 창업자가 출장시 타지역 센터의 사무 공간을 업무·회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오피스\*로 제공

\* K-Startup 홈페이지 내 스타트업 라운지(창업공간 플랫폼)에 예약·운영체계 마련

## 4. 직무역량 및 고용안전망 강화

❖ 고령자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, 디지털 전환 적응 지원 등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, 실업급여,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안전망 확충

### ① 고령자 특화 직업훈련 확대

① (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확대) 신중년 특화과정과 베이비부머 훈련 통합운영 및 지속 확대, 취업성과·훈련수요를 반영한 과정 개편 추진

\* 신중년 및 베이비부머훈련 '21년 1,500명 → '22년 2,500명

\* 중장년 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'22년부터 신중년특화과정과 베이비부머훈련 통합운영

② (노사협력 훈련과정)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이·전직 지원을 위하여 노사단체가 공동으로 훈련과정을 개발·운영하도록 지원  
('21년 시범사업 시행, 300명)

③ (재직자 직무전환훈련 지원)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재직자가 장기 유급휴가를 통한 직무전환 훈련 참여시 기업에 인건비 등 지원 강화

\* 현재 경남도에 시범운영 중인 '장기유급휴가 훈련'을 확대 적용 → 기업에게 훈련 기간 중 인건비(최저임금×150%+주휴수당), 훈련비 등 지원

### ④ 고령자 특화훈련 인프라 확충

- (생애설계 교육 프로그램 강화) 현재 중장년워크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생애설계 동영상 강좌 등 서비스를 보완 및 확대

- (고령자 직업훈련 실태분석) 고령자 직업훈련 실태, 인력수요 및 공급 등 조사·분석을 통해 수요처에 맞는 직업훈련 기반 구축

\* 인력수요 및 공급 관점에서의 고령자 적합직종 개발, 고령자 특성을 직업훈련기관 운영 및 평가기준 등 연구('22년)

### ② 고령자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

① (K-Digital Credit 확대)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을 지원하는 중장년의 범위를 경력단절여성→중장년 구직자로 확대('21.8월)

- 디지털 기초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·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코딩·빅데이터 등 훈련비 내일배움카드 한도 외 추가지원
- \* '21년 신규사업으로 시행 초기 청년 대상 지원 → 「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」(21.3월)의 일환으로 경력단절여성으로 확대 → 현장수요 반영하여 중장년 남성 구직자까지 확대(21.8월)

**< K-Digital Credit 주요내용 >**

- ▲ (사업내용)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 및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개발 지원(21년 6만명)
  - 코딩·빅데이터 분석·AI의 이해 등 디지털 기초과정 훈련을 100% 원격훈련으로 제공
- ▲ (지원내용)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한도(5년간 300~500만원) 외 50만원(1년 한도)을 추가 지급
  - \* 추가 지급된 50만원은 정해진 「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」 수강에만 사용 가능

### ③ 고령자 고용 안전망 구축

#### ① (실업급여) 현행 실업급여 적용제외 연령기준(65세 이상) 상향을 향후 고용 보험 재정전망과 연금수급연령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

- \* (현행)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
- \* (일본) 65세 이상 고령자 신규가입에 대해 실업수당(30일 또는 50일분 일시금) 지급(16)

#### ② (국민취업지원제도) 저소득 고령 구직자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득·재산요건\* 확대(21.9. 시행령 개정)

- \* 소득요건: (기존)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→ (개정)60% 이하
- 재산요건: (기존)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 → (개정)4억원 이하

- 폐업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참여요건 확대\* 등 사각지대 해소

- \* 연매출 1.5억원 이하 → 3억원 이하(21년 한시)

#### ③ (점진적 퇴직지원 확산)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활성화\* 등을 통해 점진적 퇴직지원, 장년 근로시간 단축 활용 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\*\* 지원

- \* 은퇴준비(55세 이상자) 등을 사유로 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시행(남녀고용 평등법, '20.1월 300인 이상 → '21년 30인 이상 → '22년 30인 미만)

- \*\* 워라밸일자리장려금: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등 지원 ('21년 181억 → '22년 241억)

## 5. 고령자 고용 인프라 확충

- ❖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고용연장 제도 정착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고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관별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립
- ❖ 사업장의 근로조건, 작업환경 등을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하여 고령자도 안전하고 생산성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

### ① 고령자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

- ① 기관별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고령자 고용지원이 필요한 기업·국민이라면 누구나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
  - **(고용센터)** 일반적 취업채용지원, 장려금 지급, 유관기관 역할 조율 및 협력 등
  - **(지지체)** 지역 특성여건에 맞는 사회공헌활동 지원 및 일자리 발굴확산
  - **(중장년일자리센터)** 기업 지원, 중장년층(전문직 중심) 재취업지원서비스 ↔ **(고령자인재은행)** 상시취업 어려운 고령층 대상 일자리 매칭
- ② 급격한 산업경기 변동에 따른 지역별 수요변화에 선제적·즉각적 대응 가능하도록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(전국 31개소)를 유연하게 개편
  - **(노사발전재단 센터)** 사업장 및 취업지원기관 대상 계속고용 및 재취업 지원프로그램 개발·보급, 재취업 지원업무 종사자 전문·보수교육 등 담당 → 고용위기지역 등에 컨설턴트 파견 및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
    - \* 산업별 고령자 고용가이드라인 제작·배포, 법률 자문, 고용환경개선 등 정부지원사업 연계
  - **(일반센터)** 40세이상 대상 경력설계·전직지원 등 특화서비스 집중 제공
- ③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한 일자리사업 평가·모니터링, 고령자 인력수급 전망, 적합직무 실태조사, 검사도구상담기법 개발 등 연구기능 확대
  - \* (예시) 정책분석·모니터링, 인력수급 전망 등을 상시수행하도록 한고원 인력·예산 확충
- ④ 고령 퇴직예정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커리어 인재뱅크 등록 등 검토
  - \*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통해 55세이상 고령퇴직예정자의 커리어를 등록·관리, 60세 이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채용정보 제공 및 구인기업 매칭(日本の 산업고용안정센터)



## ②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

- ① **(고령자 안전보건 교육)** 서비스업 등 고령자 다수 종사업종을 대상 재해 유형·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자료 보급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
  - \* ▲표준교안, 리플렛 등 안전보건교육자료 34종 보급
  - ▲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교육센터(6개소)에서 고령자 다수 종사 사업장 대상 교육 실시
- ② **(고령친화적 근로환경 조성)** 고령자가 많이 근무하는 중소·영세 사업장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
  - \* 장년고용안전체계구축, 작업조직 및 작업환경 개선, 안전일터 구축 등
  - \* 일터혁신 컨설팅: '21년 19,444백만원(2,480건) → '22년 22,470백만원(2,836건)
- ③ **(공동연구 및 사례발굴)** 고용부, 노사단체, 학계 등과 포럼 운영('21.10월~12월)을 통해 고령인력 활용의 필요성, 모델 개발\* 및 우수사례 발굴
  - 다양한 모델들\*에 대한 추진배경, 세부내용, 어려움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필요한 지원금 설계 및 제도개선으로 연계\*\*
  - \* 고령자 계속고용, 재취업지원, 전직훈련, 임금체계개편, 근로환경 개선 등
  - \*\*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 우수사례를 도입하는 데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지원 강화

## ③ 고령자 고용 관련 정보제공 강화

- ① **(사업주 지원 가이드북)** 기업의 고령자고용 인식제고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'사업주 지원 고령자 고용 가이드북' 제작·보급('21.下)
  - \* 고령자 고용(채용) 필요성, 임금·직무부여·교육·평가 및 고령 친화적 문화 구축 등 인사관리 방안, 정부 지원제도 소개 등(외국사례 참조)
  - 가이드북을 기초로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한 고령자 고용 관련 인사관리, 보수체계, 근로조건 등 가이드라인 개발·보급('22~)
  - \* 일본의 경우 20년간('98~'18) 82개 '업종별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' 개발·보급
- ② **(중장년고용종합 포털 구축)** 기존 중장년워크넷을 중장년 고용정책 정보를 통합적·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, 사업주 대상 고령인력 활용 정보 제공 및 홍보('22~)
  - \* 대상별(사업주·재직자·구직자 등), 기능별(인건비 지원·취업·컨설팅 등) 정보제공

#### 4 고용서비스 지원인력 역량 강화

- ① 고용서비스 종사자의 담당직무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및 경력별 보수·심화 과정 등 체계적 운영
  - \* 프로그램 개발('22년) 이후 경력별 교육과정 운영 추진
- ② 중장년을 위한 생애개발 설계·전직 지원 등에 필요한 지식·역량의 정확한 평가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 개편 추진
  - \*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퇴직컨설턴트 전문자격 신설 등 검토
- ③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대한 컨설팅 체계 구축, 취업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차등지원 등 단계별 관리 강화
  - \*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사업운영 현황 상시 모니터링, 성과제고 위해 고용센터와 합동 컨설팅

◇ 향후 고령자 고용에 대한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('21.하~) 및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('22~'26) 수립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

주요과제	담당부처	추진시기
<b>1.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확대</b>		
□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 논의		
▶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	고용부	'21.하
▶ 사회적 논의 준비	고용부	'22년
□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 확대		
▶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	고용부	'21년~
▶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지원 검토	고용부	'22년
□ 직무중심 임금체계 확산 지원		
▶ 직무중심 임금체계 우수사례 확산	고용부	'21년~
▶ 임금정보 제공	고용부	'21년~
<b>2. 노동이동 촉진 등 재취업지원 활성화</b>		
□ 노동이동 촉진을 위한 지원금 신설		
▶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	고용부	'22년~
▶ 노동전환 지원금 신설	고용부	'22년~
□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		
▶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정착 지원	고용부	'21년 ~
▶ 재취업지원서비스 우수사례 발굴	고용부	'22년 ~
▶ 중소기업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	고용부	'21년~
▶ 맞춤형 재취업지원프로그램 확충	고용부	'21년 ~
□ 신중년 적합직무 및 경력형 일자리 내실화		
▶ 신중년 적합직무 확대	고용부	'21년 ~
▶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내실화	고용부	'21년 ~
□ 퇴직전문인력 활용 숙련전수		
▶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	과기부	'21년~
▶ 뿌리산업 기술 노하우 전수	중기부	'21년~
□ 노인일자리 내실화		
▶ 노인일자리 모델 다변화	복지부	'22년
▶ 인프라 내실화	복지부	'22년~
▶ 맞춤형 노인지원팀 확대	복지부	'21년~

주요과제	담당부처	추진시기
<b>3. 기술창업 지원 확대</b>		
□ 기술창업 사전준비 지원		
▶ 대기업 등 퇴직지원 프로그램 연계	중기부	'22년~
▶ 사내벤처·분사창업 지원	중기부	'22년~
□ 실전 기술창업 사업화 지원		
▶ 특허기술기반 창업사업화 지원	중기부특허청	'21.하~
▶ 자금 공급 확대	중기부	'22년~
□ 기술창업 접근성 제고		
▶ 청년↔중장년 네트워킹 확대	중기부	'21.하~
▶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기능 강화	중기부	'22년~
<b>4. 직무역량 및 고용안전망 강화</b>		
□ 고령자 특화 직업훈련 확대		
▶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확대	고용부	'22년~
▶ 노사협력 훈련과정	고용부	'21.하
▶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지원	고용부	'22년
▶ 고령자 특화훈련 인프라 확충	고용부	'22년
□ 고령자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		
▶ K-Digital Credit 적용대상 확대	고용부	'21.하~
□ 고령자 고용 안전망 구축		
▶ 실업급여 적용제외 연령기준 상향 검토	고용부	-
▶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확대	고용부	'21.하
▶ 점진적 퇴직지원 확산	고용부	'21년~
<b>5. 고령자 고용인프라 확충</b>		
□ 고령자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		
▶ 취업지원기관간 역할 재정립 및 연계 강화	고용부	'22년~
▶ 연구 인프라 확대 추진	고용부	'22년~
□ 고령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		
▶ 고령자 안전보건 교육	고용부	'21년~
▶ 고령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일터혁신 컨설팅	고용부	'21년~
▶ 공동연구 및 우수사례 발굴	고용부	'21.하~
□ 고령자 고용 관련 정보제공 강화		
▶ 사업주 지원 가이드북 및 가이드라인 개발	고용부	'21년~
▶ 중장년 고용종합 포털 구축	고용부	'22년~
□ 고용서비스 지원인력의 역량 강화		
▶ 경력별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	고용부	'22년
▶ (가칭) 퇴직컨설턴트 자격 신설 검토	고용부	'22년~